

ISSUE REPORT 2017-07

 www.thetomorrow.kr

 facebook.com/thetomorrow100

Welfare / Pension reform
불평등한 연금의 진실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다른백년 연구위원

군인들의 특수한 근무여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보상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에 진행된 군인연금 개혁논의가 실패한 이유는 소수의 이해당사자들에 편향된 목소리와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얽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글은 군인연금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공익적 관점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크게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으로 나뉜다. 이 중 특수지역연금은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가입대상은 공무원, 사립 학교 교직원, 그리고 군인 등이 있다.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또 사회의 이익(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대할 필요가 있었다. 보통 시장의 일자리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던 특수지역 노동자들을 위해 별도의 보상조치가 필요했고, 보상조치로 도입된 것이 바로 높은 보장수준을 가진 특수지역연금이다. 특수지역연금이 높은 보장수준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은 안정된 노동환경 유지로 인해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수지역연금에 대한 국가 보전금의 과도한 규모와, 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인해 특수지역연금의 개혁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수지역연금의 지속안정성을 위해 보장성 수준을 낮추고 기존의 ‘덜 내고 더 받는’구조에서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의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특수지역연금 중 공무원연금은 개혁을 통해 기여금의 수준을 높이고, 소득보장률의 규모를 축소했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개혁을 했으나 여전히 타 연금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수지역연금이 우대받아야 하는 이유

특수지역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낮은 임금-높은 연금’이라는 이유로 높은 연금수준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왔다. 특수지역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시장의 중·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연금으로 보상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특수지역연금의 우대는 전 생애에 걸친 일반사회 일자리와의 보수 총량에 따라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은 민간의 임금수준에 비해서 83.4%수준으로 낮다.

[표 1] 민·관 보수격차 요약(2015년)

(단위 : 민간 = 100.0)

구분		일반직	경찰직	교원직	전체
전체		76.0	87.3	86.7	83.4
산업	제조업	33.7	75.7	79.2	73.5
	금융통신업	66.4	76.3	76.3	73.0
규모	300인이상	68.9	78.5	80.8	76.0
	500인이상	65.9	74.8	77.9	72.8
학력	고졸이하	99.2	110.6	-	102.6
	전문대졸	95.4	104.0	-	97.7
	대졸이상	69.2	78.1	86.7	79.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6), "2015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특수직은 민간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사회구조를 유지·지탱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계층이 전 생애에 걸쳐 받는 누계보수의 총액이 민간의 누계보수 총액에 비해 앞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관임금격차의 실태와 과제(2017)'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의 임금은 민간의 임금에 비해 6.3~6.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은 공무원이 6,257만원, 민간이 5,124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까지 소득 누계 기대치가 공무원이 민간에 비해 7억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평생 임금이 더 높다는 근거는 두 보고서 모두 높은 임금 인상률과 낮은 퇴직시점으로 인한 장기 근무를 꼽았다.

한국경제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7억 이상의 임금격차가 나고, 이 임금격차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격차가 더해지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개혁목소리가 커졌고, 2015년 개혁을 통해 전체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성공한다.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과 보상 체계

공무원연금이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속해서 개혁해온 것과 달리,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논의는 2013년의 개혁 이후로 없다. 2014년에 정부가 개혁의사를 내보였지만, 연금 수급자와 정치권의 반대로 단 하루 만에 개혁주장을 철회했다. 사실 특수직역연금 중에 가장 혜택이 큰 제도는 군인연금이다. 군인연금이 유독 특별하게 설계된 이유는 군인이라는 직업이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다. 군인은 전쟁과 같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군인의 사회적 역할에 더하여 군인이라는 직업이 갖는 위험성을 보상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¹⁾

-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군인은 정년이 짧고, 재취업이 어렵다.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은 분명히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 보상체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군인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측면에 대해서 특수임무수당 등의 형태로 보상을 주고 있다. 예컨대 공수부대나 잠수함 부대와 같은 특별히 위험한 임무를 담당할 경우, 위험수당이 지급된다. 임무수행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국가가 치료와 회복을 전담해준다. 군인들은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만큼,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임무에 지장을 겪지 않도록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고, 자녀들의 학자금과 관련해서는 무이자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등, 군인의 특수성에 근거한 다양한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년이 짧고 재취업이 어려운 문제도 연금의 특수성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 연금이란 근로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도 생활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년 전역 등을 통해 근로 소득이 없어졌다고 해도, 정년이 짧은 만큼 여전히 노동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찾도록 유도하고 도와줘야 한다. 선진국의 재취업율을 보면 미국 95%, 독일 93.4%, 프랑스 92% 등으로 우리의 54.3%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²⁾ 따라서 젊은 나이에 전역을 선택하게 된 군인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장을 찾도록 유도해야지, 연금을 통해

보상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보상체계에 입각해 보면 군인연금의 특혜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국민연금은 물론, 같은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더라도 군인연금의 혜택은 지나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군인이 우리 사회에 제공하는 ‘안보’의 가치는 사회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그들이 받는 혜택의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군인연금의 특혜와 관련된 문제들을 같은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군인연금의 특혜 I : ‘덜 내고 더 받는 연금’

연금의 수입구조는 보통 4가지로 분류된다. 연금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기여금’, 연금가입자의 사용자(특수직역연금은 국가)가 납입하는 ‘국가보조금’, 연금기금의 운용을 통한 ‘기금수익’, 그리고 특수직역연금은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인 ‘국가보전금’이 있다. 국가보전금은 기여금, 국가보조금, 기금수익으로 한 해에 지출하기로 한 연금액을 지출하지 못할 때, 부족분을 충당해주는 돈이다.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부족분에 대한 국가의 지급을 의무화해 두었기 때문에 민간연금과는 다르게 보전금이 포함된다.

먼저 살펴볼 것은 기여금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모두, 낮은 기여율로 인해 수입구조가 약하다는 것이 늘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공무원연금은 2012년의 개혁을 통해 기여율을 7%로 올리고, 2015년의 개혁을 통해 기여율을 8%로 조정했다. 이후 매년 조금씩 높아져 2020년에는 최종적으로 9%의 기여금을 내게 된다. 반면 군인연금은 2013년의 개혁을 통해서 기여율을 7%로 올린 이후, 번번히 개혁시도가 실패하면서 여전히 7%를 유지하고 있다.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연금의 기여율은 현재 1%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군인연금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의 차이가 나게 된다.

연금은 비례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기여금을 많을수록 연금수급액도 높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분명 공무원연금보다 낮은 기여율로 인해 낮은 기여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이후 연금 수급시에는 공무원연금보다 더 많은 월평균연금을 수급한다.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임금

상한이 높으며³⁾, 연금 가산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간 비교(2016년말 기준)

구분	기여율	연금가산율	1인당 연간 기여금 (평균)	월 평균 연금수급액
공무원	8.25% (2020년 9%)	1.856% (2035년 1.7%)	385만원	233만원
군인	7%	1.9%	302만원	255만원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2017),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 별 분석(국방위원회)",
국회 예산정책처(2017)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재구성

군인연금의 특혜Ⅱ : '짧고 길게 받는 군인연금'

두 연금 간에는 또 다른 결정적이 차이가 존재하는데 바로 '지급개시시점'이다.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시점은 공무원연금이 10년 근무, 군인연금이 20년 근무로 언뜻 불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급개시시점이 군인연금은 퇴역 직후(20년 이상 근무 기준)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현재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2015년 개혁의 결과 단계적으로 연기되어 2033년이 되면 65세에 수령하게 된다.

[표 3]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간 비교(2016년말 기준)

구분	소득대체율	수급권 발생 시점	연금가산율	재직기간상한	지급개시시점	평균 수급기간
공무원	62.7	10년 이상	1.856% (2035년 1.7%)	36년	65세 (2033년 이후)	9.8년
군인		20년 이상	1.9%	33년	퇴역 직후	17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7)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국회 예산정책처(2017)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재구성

보통 20대에 직업군인으로서 군 복무를 시작하면, 40대가 되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가 밝혔듯이 군인은 정년이 짧기 때문에 정년을 채우고 제대한다고 해도 보통 50대 중반이 된다. 군인사법에 명시된 계급 정년을 보면 20대에 군복무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30년 이상 복무를 하면 정년을 채우게 된다.⁴⁾ 2015년 전역자의 복무경력을 보더라도 총 3,445명 중 30년 이상 복무를 한 사람의 숫자가 2,243명으로 전체의 65%이상이다. 그렇다고 해도 연령은 50대 중반이거나 후반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더 일찍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렇다 보니 낮은 기여율로는 도저히 연금지출을 메울 수 없게 되었다.

군인연금의 특혜Ⅲ : '3배 더 받는 국가보전금'

국가보전금은 앞서 설명했지만, 예상 지출을 메우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부족분을 메워주는 돈이다. 군인연금이 낮은 기여율임에도 높은 연금수급을 할 수 있고, 수급기간이 공무원연금보다 7년 정도 더 길지만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국가보전금에 있다. 군인연금은 도입시기부터 수급자가 발생한 제도이고,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연금가입기간은 3배로 가산함으로써 제도 도입부터 너무 많은 수급자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최대 70%로 지금보다도 높았다. 평균수명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장기간 수급자가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기여율의 인하와 증가를 거치면서 결국 지금의 형태로 정착하였다.

군인연금이 적자가 나기 시작한 것은 1973년이다. 이때부터 기여금보다 수급액이 많아지면서 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이 규모는 점점 커져 지난 2015년에는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국가보전금이 발생했다. 1조 3천억원이라는 수치는 2015년도 군인연금 수입전체의 47%에 달한다.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적자신세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국가보전금을 받아왔다. 규모는 2015년 22%로 정점을 찍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무원연금은 2013년에 기여율을 7%로 올리는 조치를 감행하고도 2014년 국가보전금 규모가 20%를 넘자, 2015년의 개혁을 통해 기여율을 8%로 올렸고 2016년 국가보전금 규모를 16%까지 떨어뜨렸다는 점이다.⁵⁾

[그림1]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합계	자체수입 및 법정부담금	국고보전금	국고보전 비율
1994년	729,679	273,845	455,834	62.5
1995년	852,263	352,053	500,210	58.7
1996년	887,036	424,414	462,622	52.2
1997년	867,812	375,211	492,601	56.8
1998년	942,827	405,697	537,130	57.0
1999년	1,001,707	606,799	394,908	39.4
2000년	1,043,064	586,139	456,925	43.8
2001년	1,193,247	641,842	551,405	46.2
2002년	1,252,133	683,170	568,963	45.4
2003년	1,421,457	790,133	631,324	44.4
2004년	1,521,109	906,430	614,679	40.4
2005년	1,665,777	809,427	856,350	51.4
2006년	1,732,698	857,157	875,541	50.5
2007년	1,850,979	897,390	953,589	51.5
2008년	1,938,916	989,681	949,235	49.0
2009년	2,056,942	1,116,036	940,906	45.7
2010년	2,206,821	1,150,240	1,056,581	47.8
2011년	2,354,500	1,127,897	1,226,603	52.1
2012년	2,545,008	1,295,059	1,249,949	49.1
2013년	2,711,756	1,342,568	1,369,188	50.5
2014년	2,835,227	1,461,944	1,373,283	48.4
2015년	2,855,572	1,512,477	1,343,095	47.0

자료: 국방부(2016), "2015군인연금 통계연보"

[표 4]를 보면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 규모가 약 2조 3천억원,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 규모는 약 1조 3천억원으로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 규모가 크다. 하지만 군인연금의 수급자수가 약 9만명, 공무원연금은 약 45만명의 규모이다. 이를 1인당 지원규모로 나누면 군인연금은 1인당 1,534만원, 공무원연금은 512만원으로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난다. 1인당 국가보전금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군인들이 공무원들에 비해 3배나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 비교

구분	적자 발생시점	2016년 결산기준 보전금 액수	수급자수	1인당 보전금 지원액
군인	1973년	1조 3,665억원	89,098명	1,534만원
공무원	2001년	2조 3,189억원	452,942명	512만원

자료: 예산정책처(2017)"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재구성

즉, 앞서 설명했던 군인연금의 낮은 기여율과 높은 수급액, 그리고 이른 수급개시와 긴 연금수급기간의 부담을 높은 보전금규모로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글의 도입부에서도 설명했듯이 특수직역중에서도 군인은 더 특수한 직업군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같은 특수직역군 내에서도 국가의 지원규모가 3배나 넘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군인연금의 특혜Ⅳ : ‘재취업을 해도 그대로 받는 연금’

군인은 짧은 정년으로 인해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직장이 아니면 재취업을 한다고 해서 연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거의 없다.⁶⁾ [표5]에서 보듯이 최대기준인 ‘평균임금월액 200만원 이상 초과’할 경우 50만원에 초과분의 50%가 삭감되는데 평균임금월액기준은 2015년 337만원으로 537만원의 임금을 매월 받아야 적용대상이 된다. 군인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255만원에 해당 기준을 적용시 "255-50(초과액에 따른 기준 지급정지액)-100만원(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200만원의 100분의 50)"으로 연금수급액은 105만원이다. 임금과 합하면 월 임금은 638만원이 된다.

[표 5] 소득월액에 따른 군인연금 지급정지액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 (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 + 50만원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 + 100만원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 + 150만원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200만원 이상	50만원 + 200만원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자료: 군인연금법 제 21조의 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②

반면 공무원연금은 지난 2015년의 개혁으로 해당기준을 평균임금월액이 아니라 평균연금월액으로 조정했다. 또한 임대소득도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실질 연금수급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⁷⁾

[표 6] 소득월액에 따른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액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 (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의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 + 50만원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 + 100만원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 + 150만원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200만원 이상	50만원 + 200만원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자료: 공무원연금법 제 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군인연금의 특혜 V : ‘재분배 기능이 없는 순수 소득비례형’

[표 7]은 계급에 따른 연금 수령액을 나타낸 표이다. 부사관으로서 가장 높은 직위인 준위·원사계급이 31~2년을 근무하고 270여만원을 수급하는데 반해 장교들의 경우 32년 근무한 중장, 대장계급의 평균 수급액은 400만원을 넘는다. 물론 장교계급이 부사관계급에 비해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슷한 기간을 근무했는데 연금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령계급이 보통 21년을 근무하고 190여만원을 받는데 중사계급이 22년을 근무하고 140만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면 장교/부사관 간의 계층에 의한 연금수급액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 7] 군인 계급별 전역시 연금 수령액

구분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준위	원사	상사	중사
최고 임금	725 만원	712 만원	512 만원	488 만원	443 만원	409 만원	347 만원	365 만원	331 만원	283 만원	264 만원
수급 금액	452 만원	430 만원	386 만원	353 만원	330 만원	265 만원	191 만원	276 만원	267 만원	168 만원	140 만원
평균복무기간	32.7	32.5	31.9	30.2	29.4	26.0	21.0	30.9	32.1	24.6	22.7

자료: 국방부(2016) "2015년 군인연금 통계연보",

연합뉴스(2014) "대령 전역하면 군인연금 月330만원...중장은 430만원*"을 바탕으로 재구성

주: 위관장교와 하사의 경우 근속정년에 걸려 연금수급대상이 될 수 없다.

계급에 따른 연금수급액의 차이는 임금의 차이로 의한 것이다. 군인연금제도 자체가 순수 소득비례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임금이 높은 장교계층과 일부 고위 부사관계급이 연금을 더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보조금과 보전금 없이는 불가능하다. 군인연금의 수익구조에서 국가보조금과 국가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정도이다. 군인연금이 순수 소득비례형을 유지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고위 장교와 부사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몰아주는 셈이다. 군인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군인연금의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연금이다. 그런 공적연금이라

면 군인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목적 이외에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작동해야 하는 것이 옳다. 1차소득에서 이미 장교계층과 부사관계층의 양극화가 나타나 있는데, 2차소득인 연금조차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이번 2015년 개혁을 통해서 공무원연금 내부의 재분배효과를 도입했다. 연금 가산율 1.7%에서 1%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0.7%는 소득 비례연금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발생해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게 되는 개혁을 이뤄냈다.⁹⁾

군인연금의 우대수준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합의점을 찾아내어 변화해 왔다. 그러나 군인연금은 계속해서 ‘덜 내고 더 받는’, ‘짧고 길게 받는’, ‘(공무원연금에 비해)3배나 많은 국가보전금’, ‘재취업을 해도 그대로 받는 연금’, ‘재분배 기능이 없는 순수 소득비례형’ 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유지하고자 한다. 국민들은 물론, 각계 각층에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2014년의 사건을 볼 때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은 아직도 요원한 것 같다.

군인들의 특수한 근무여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2014년의 개혁논의가 실패한 이유는 소수의 이해당사자들의 주장과 정치권의 이해득실이 얽혀있었기 때문이다. 군인연금 개혁을 위해서 사회 전체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각 주

- 1) 국방부, http://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11304040000
- 2) 업타운뉴스, 20171012, "국방부 국정감사, 병사월급 얼마나 올려줄까?"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deView.html?idxno=73840>
- 3) 군인연금의 임금상한은 공무원평균임금의 1.8배, 공무원연금은 2015년의 개혁으로 1.6배로 조정
- 4) 군인사법 8조에 따른 계급별 정년연령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위관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정년	63세	61세	59세	58세	56세	53세	45세	43세	55세	55세	53세	45세	40세

- 5) 연금수입대비 국가보전금 비율, 공무원연금통계로부터 재구성.
- 6) 군인연금법 제21조의 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에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7) 공무원연금법 제 47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8) 연합뉴스 20140804, "대령 전역하면 군인연금 月 330만원...중장은 430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8/02/0200000000AKR20140802051100002.HTML?input=1179m>
- 9) 경향신문 20150503, [공무원연금 개혁안]"70년간 333조원 재정절감"... 수지균형 못 맞춰 '반쪽 효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032212345&code=910402#csidx99f10d9c03d5c71a7b37e7181152b09

참 고 문 헌

국방부(2016). "2015 군인연금 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2017). "2016 연금통계".

국회예산정책처(2017).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2016). "2015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윤석명 외(2006.9). "특수직역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06.9) pp. 2-29.

이미연(2017).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정홍원(2006.7).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혁방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2006.7) pp. 12-18.